

전주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4941, 2021가합1635(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최경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수진

피 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진현덕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F, G, H과 피고 C, 피고 D이 2018. 10. 19. 별지 목록 기재 출자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출자지분에 관하여 F에게 152,000좌를, G에게 4,000좌를, H에게 4,000좌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G, H의 출자지분 양도 등

1) F은 2003. 3. 31.부터 2018. 11.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G, H은 모두 I생으로 F의 아들들이다.

2) F은 F 본인 겸 G, H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8. 10. 19. 피고 C, D과, F이 자신 명의와 G, H 명의로 보유하던 유한회사 J(이후 2019. 1. 18. 상호가 'K 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2020. 1. 14. 다시 '유한회사 J'로 상호를 변경되었다가, 2020. 1. 22. 'K 유한회사'로 상호를 재차 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의 총 출자지분 160,000좌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출자지분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출자지분 양수도 계약서

양도인 1(갑): F

양도인 2(갑): G

양도인 3(갑): H

양수인 1(을): C

양수인 2(을): D

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출자지분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물 : (유) J 출자금 160,000좌

2. 거래금액: 2018. 9. 30. 현재 (유)J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동산(건물)의 가액에서

금융기관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

3. 대금지급방법: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에서 상계한다.

4. 거래일자 : 2018년 10월 19일. 끝.

3) 그 후 2019. 1. 18.경 J의 위 출자지분 160,000좌인 피고 C의 출자지분 81,600좌와 피고 D의 출자지분 78,400좌는 피고 E에게 전부 양도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경과 및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수계

1) 원고는 2019. 1. 15. 전주지방법원 2018회합1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그 당시 대표이사인 L으로 되었다가 2019. 12. 4. B로 변경되었다.

2)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는 이 사건 각 소를 제기하였다(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는 애초 피고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4941호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출자지분 전부의 전득자인 피고 E을 상대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1635호 소를 제기하였다. 그후 2021. 6. 28. 위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4941호 사건에 위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1635호 사건이 병합되어 이 사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그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9. 27.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원고가 2021. 11.경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F에 대하여 2015. 12. 31. 기준으로 18억 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F이 실질적으로 그 소유인 J에 대한 위 출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양도인을 F, G, H으로 하여 피고 C, D와 체결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F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소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8. 10. 19.경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1, 6, 7, 9호증,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8. 10. 19. 당시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F의 피고 C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C, D에게 F과 그 아들들인 G, M 명의로 된 J의 위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15년 이상 원고를 운영한 원고의 대표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2013. 6. 7. J을 설립한 이후 J의 대표이사 내지 대표자로서 J을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F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J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할 수 있다.

- ② 피고 C과 피고 C 운영의 유한회사 N은 2015. 3.경 원고의 감사로서 부사장 혹은 부회장의 직책을 수행하던 O의 소개에 따라 원고 혹은 F에게 자금을 대여 혹은 투자하였고, 이후 원고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2017. 3.경 피고 C이 원고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고의 사업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 C은 2018. 3. 30.부터 2019. 12. 4.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 ③ 이후 F 혹은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C이 대여 혹은 투자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F은 2018. 8. 27.경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 C에게 F과 그 아들들인 G, H 명의로 된 J의 위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이에 관한 J 명의의 기안서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F이 F, G, H를 양도인으로 하여 피고 C, D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양도인 F 등이 양수인 피고 C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으로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F은 채무초과상태였다.
- ④ 원고는 2018. 1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령시 P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는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피고 C과 유한회사 N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이사회에는 F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C이 사내이사로서, O이 감사로서 참여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Q 혹은 유한회사 N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가 2018. 11. 19. 위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 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 C이 원고 혹은 그 대표이사인 F에게 투자 혹은 대여한 자금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 역시 피고 C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양도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 당시 원고의 주요 임원인 F, O, 피고 C 등이 참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 C과 O 등은 F이 원고로부터 대여 혹은 투자 받은 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과, 이에 F이 피고 C에게 그 전부가 실질적으로 F 소유인 J의 위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이고, F이 위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거나 그 무자력 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8. 10. 19.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0. 9. 11. 내지 2021. 4. 13.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이 사건 각 소가 이와 같이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목적이 된 출자지분이 모두 F, G, H에게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김진웅, 판사 임종찬

별지

출자지분의 표시

1. 법인명 : 유한회사 (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1. 출자 1좌의 금액 : 금 5,000원
1. 자본금의 총액 : 금 800,000,000원
1. 총출자좌수 : 160,000좌. 끝.

